

2023년도 3/4분기

#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3. 11.

감사위원회

# 1. 개요

## 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
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,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## 보고 대상

- 기 간 : 2023. 7. 1. ~ 9. 30.(2023년 3분기)
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시장 핫라인) 및 오프라인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이첩된 공익제보 등

## 접수결과

- 2023년 3분기 총 48건 접수

[표 1] 2023년 3분기 창구별 접수현황

(단위 : 건)

접 수	창 구	합 계	7월	8월	9월
공 익 제 보	공직자비리신고	31	10	14	7
지 원 센 터	공 익 신 고	16	3	4	9
국민권익 위 원 회	국 민 신 문 고	-	-	-	-
감질피해신고		1	-	-	1
합	계	48	13	18	17

## 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### 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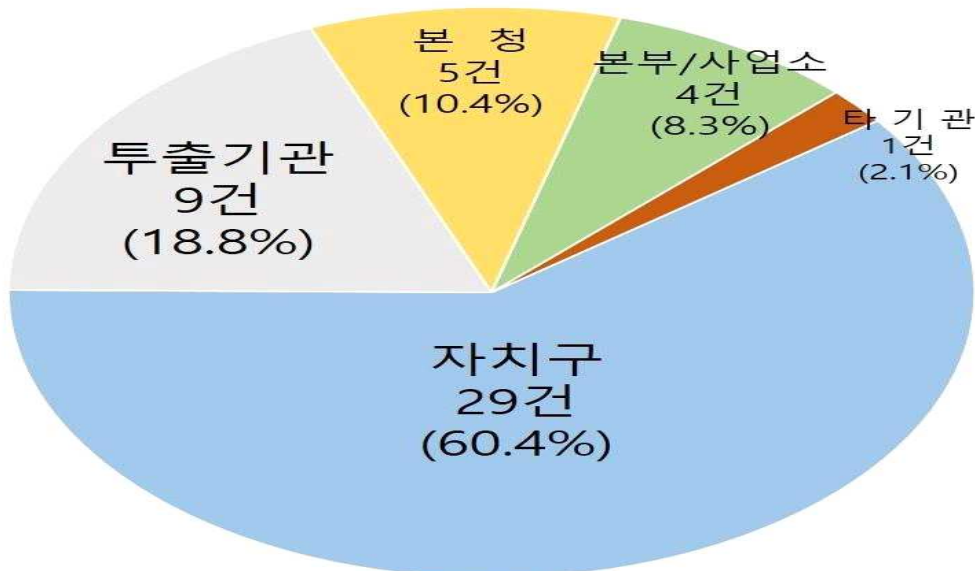
(단위 : 건)

경로	합 계	공익제보지원센터		국민권익위원회
		온 라인 PC/모바일	오프라인 우편/방문/팩스	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/이첩
접수건수	48 (100%)	46 (95.8%)	2 (4.2%)	-

\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### □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-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29건(60.4%)으로 가장 많았음
  -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신고 대상 법률과 관련한 공익신고 6건
  - 자치구 직원 복무 등의 부패 신고 15건
  - 기타민원 8건
- 본청 소관 사무 제보 5건(10.4%), 본부/사업소 소관 4건(8.3%)
  - 본청의 경우 부패신고 3건, 공익신고 2건
  - 본부/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1건, 부패신고 1건, 기타민원 2건
-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9건(18.8%), 타기관 1건(2.1%)
  -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부패신고 8건, 기타민원 1건
  - 타기관 1건은 서울시청 외 소관민원



### 3. 공익제보 분류

#### 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48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36건

[표 3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

(단위 : 건)

총계	공익제보 해당 36건(75%)		기타
	부패신고	공익신고	
48 (100%)	27 (56.2%)	9 (18.8%)	12 (25%)

\* 기타 민원은 청원/제안/건의/항의/단순 불친절/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등

#### ※ 조례상 ‘공익제보’ 해당 신고 범위

구 분	개 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	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※ 2호의 재산상 손해는 1호의 사익도모에 의한 부패행위 유형과 균형을 이루는 정도의 행위인 경우이며 단순 부주의나 직무소홀은 제외(판례)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	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<b>471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</b>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공정한 직무수행(직무수행 기본자세 등),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,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)등 서울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위반 행위

## 4. 공익제보 내용 분석

### □ 공익제보 해당 36건 세부내역

#### ○ 부패신고 해당 27건 세부 내용

[표 4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분	소관기관	건수	내 용
업 무 부 적 정	본 청	2	업무 추진 과정 중 부당행위
	본부·사업소	1	
	자치구	9	
	투자출연기관	5	
	소 계	17	
불 공 정 행 위	본 청	-	입찰이나 채용, 인사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
	본부·사업소	-	
	자치구	2	
	투자출연기관	1	
	소 계	3	
복 무	본 청	1	초과근무/출장 부정행위, 직무 태만, 품위유지 위반 등
	본부·사업소	-	
	자치구	4	
	투자출연기관	2	
	소 계	7	
총	계	27	

\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 포함

## ○ 공익신고 해당 9건 세부 내용

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 분	건수	소관기관	조치 상황	내 용
건 축 법	3	자 치 구	시정명령1, 진행중2	불법증축 등
개인정보보호법	1	자 치 구	사업중단	재건축 관련
성매매피해자보호법	1	본 청	진행중	시설 운영 관련
아 동 복 지 법	1	자 치 구	진행중	시설 운영 관련
영 유 아 보 육 법	1	자 치 구	진행중	어린이집 관련
장 애 인 복 지 법	1	자 치 구	진행중	시설 운영 관련
청 원 경 찰 법	1	본부/사업소	진행중	청원경찰 복무 위반 의심
총 계	9			

\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, 적용 법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\* 조례의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에 따라 세부내용은 나타내지 않음

## 5. 처리 및 조치 결과 (2023. 9. 30.기준)

### □ 처리 내역

[표 6] 접수제보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총계	처분 및 개선(5)		종결(13)			진행중	취하
	처분 (조치)	개선 등	해당없음	권한없음 (직접제보안내)	중복 등 (중거별중분, 보완요구 등)		
48	4	1	6	1	6	25	5

※ 개선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5항

### □ 처분(조치) 내역

[표 7] 공익제보 조치 결과(요구 포함)

(단위 : 건)

연번	신고구분	신고 내용	처분기관	조치 내역
1	부패	투출기관 직원 복무 관련	투출	신분상 조치
2	부패	자치구 직원 복무 관련	자치구	부서주의 및 교육
3	공익	건축법 위반 의심	자치구	시정명령
4	공익	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심	자치구	사업중단